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제20조[노동조합비 등 일괄공제] ① 농협은 매월 급여(또는 성과급) 지급일에 조합원의 조합비 및 노동조합 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 등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에 인도한다.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공제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급여지급일 3일전까지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.	제20조[노동조합비 등 일괄공제] <u>작동</u>	제20조[노동조합비 등 일괄공제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매월 급여(또는 성과급) 지급일에 조합원의 조합비 및 노동조합 의결기관에 의해 의결된 각종 부과금 등을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노동조합에 인도한다. ② 노동조합은 조합원 및 공제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급여지급일 3일전까지 농협에 통보하여야 한다.	유지
제4장 고용보장 제26조[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] ① 농협은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. ② 농협은 일시적인 경기침체, 경영합리화,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.	<u>제3장 고용보장</u> <u>제24조</u>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] <u>작동</u>	제4장 고용보장 <u>제26조</u> [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노사협의 하에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한다. ② 농협은 일시적인 경기침체, 경영합리화, 작업방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정원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며, 불가피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.	<u>수용</u>
제32조[우선 채용] 농협은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감원된 자가 재입사 요구가 있을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. 단, 희망퇴직자에 한해서는 제외한다.	제32조[우선 채용] <u>삭제</u>	제32조[우선 채용] (1차 합의) <u>삭제</u>	삭제
제37조[인사위원회 구성]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이 된다. ② 위원회는 조합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 4명,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1인과 분회장, 분회장이 지명하는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, 소집일	<u>제34조</u> [인사위원회 구성]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이 된다. ② 위원회는 조합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 4명,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1인과 <u>지회장, 지회장</u> 이 지명하는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, 소집일	<u>제36조</u> [인사위원회 구성] (1차 합의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장이 된다. ② 위원회는 조합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 4명, 4급 이상 직원 중 조합장이 지명하는 1인과 지회장, 지회장이 지명하는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며, 소집일	<u>수용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위원회 참관 및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각서를 받는다. ⑥ 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	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위원회 참관 및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각서를 받는다. ⑥ 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	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·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, 위원회 참관 및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각서를 받는다. ⑥ 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그 요지를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	
제41조[승진·승급] ① 직원의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,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. ② 정기승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.	제38조 [승진·승급] <u>좌동</u>	제40조 [승진·승급] (1차 합의) ① 직원의 승진은 모든 직원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, 군복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한다. ② 정기승급은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.	수용
제42조[표창] 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. 1. 기술상,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, 고안한 자 2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.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.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며, 농협은 이 경우 적극 반영한다.	제39조 [표창] <u>좌동</u>	제41조 [표창] (1차 합의) 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표창한다. 1. 기술상,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, 고안한 자 2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.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.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으며, 농협은 이 경우 적극 반영한다.	<u>수용</u>
제49조[징계의 종류 및 효력]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농협 제 규정을 따른다.	제46조 [징계의 종류 및 효력] <u>좌동</u>	제48조 [징계의 종류 및 효력] (1차 합의)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농협 제 규정을 따른다.	<u>유지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제60조 임금의 결정]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.	제56조 임금의 결정] <u>작동</u>	제59조 임금의 결정 (1차 합의) 조합원의 임금은 매년 임금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.	<u>유지</u>
제63조 비상시 지불] 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에는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한다. ① 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 시 ② 직계가족(본인 포함)이 사망하였거나 질병, 재해, 사고를 당하였을 때 ③ 자녀 입학 시 ④ 휴직, 퇴직, 해고 시 ⑤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⑥ 천재지변,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	제59조 비상시 지불] <u>작동</u>	제62조 비상시 지불 (1차 합의) 농협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청구가 본인으로부터 있을 시에는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한다. ① 배우자 또는 본인 출산 시 ② 직계가족(본인 포함)이 사망하였거나 질병, 재해, 사고를 당하였을 때 ③ 자녀 입학 시 ④ 휴직, 퇴직, 해고 시 ⑤ 본인 및 자녀 결혼 시 ⑥ 천재지변, 기타 돌발적인 사고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노사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	<u>유지</u>
제66조 휴가의 종류] 농협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. ① 연차휴가 ② 인정휴가 ③ 청원휴가 ④ 명령휴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휴가의 종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단체협상 체결 결과에 따라 변경 적용한다.	제62조 휴가의 종류] 농협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. ① 연차휴가 ② 인정휴가 ③ 청원휴가 ④ 명령휴가 ⑤ <u>삭제</u>	제65조 휴가의 종류 (1차 합의) 농협은 다음 각 호의 유급휴가를 허용한다. ① 연차휴가 ② 인정휴가 ③ 청원휴가 ④ 명령휴가 ⑤ 삭제	<u>수용</u>
제69조 청원휴가] 청원휴가는 직원이 제66조 및 제 67조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누계 2월 범위 내에서 허용 할 수 있다.	제65조 청원휴가] <u>작동</u>	제68조 청원휴가 (1차 합의) 청원휴가는 직원이 제66조 및 제 67조에 규정한 휴가일수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질병,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 누계 2월 범위 내에서 허용 할 수 있다.	<u>유지</u>
제70조 명령휴가]	제66조 명령휴가]	제69조 명령휴가 (1차 합의)	<u>유지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① 농협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사고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휴가를 명할 수 있다. 1. 전염성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기간 이내 2. 농협은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연6일 이내의 기간 ② 제1항 제1호의 전염성 질병의 종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u>좌동</u>	① 농협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사고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휴가를 명할 수 있다. 1. 전염성 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하여는 제68조의 기간 이내 2. 농협은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연6일 이내의 기간 ② 제1항 제1호의 전염성 질병의 종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
제71조근속년수 계산 휴가기간 및 휴직기간 산정을 위한 근속 년수 계산은 농협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한다.	<u>제67조</u>근속년수 계산 <u>좌동</u>	<u>제70조</u>근속년수 계산 (1차 합의) 휴가기간 및 휴직기간 산정을 위한 근속 년수 계산은 농협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한다.	<u>유지</u>
제72조연차 휴가와외의 관계] 인정휴가, 청원휴가, 명령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<u>제68조</u>연차 휴가와외의 관계] <u>좌동</u>	<u>제71조</u>연차 휴가와외의 관계] (1차 합의) 인정휴가, 청원휴가, 명령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	<u>유지</u>
제74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] ① 농협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 1.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. 외환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. 국고금(제세공과금 포함) 수납시간 연장근로 4. 결산 및 가 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5.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.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단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영농기 무휴근무자의 임금은 분회별 별도협약에 의한다. ③ 제1항 5호에 의한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	<u>제70조</u>연장근로 및 휴일근무] ① 농협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 1.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. 외환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. 국고금(제세공과금 포함) 수납시간 연장근로 4. 결산 및 가 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5.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② 제1항의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.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단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영농기 무휴근무자의 임금은 <u>지회와의의</u>에 의한다. ③ 제1항 5호에 의한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	<u>제73조</u>연장근로 및 휴일근무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농협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. 1. 특별한 사유로 인한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로 2. 외환관련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3. 국고금(제세공과금 포함) 수납시간 연장근로 4. 결산 및 가 결산 업무에 따른 연장근로 5. 특별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조합장이 인정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 ② 제1항의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.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단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영농기 무휴근무자의 임금은 <u>지회와의의에 별도협약에 의한다.</u> ③ 제1항 5호에 의한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	제70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무] ① 유지 ② 제1항의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.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 단 경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영농기 무휴근무자의 임금은 <u>지회와의의 별도협약에 의한다.</u> ③ 유지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중식 보조비, 교통 보조비를 지급한다. 제75조[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합의] 농협은 농협노동자에게 제74조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,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. 단, 노동조합 행사시 각 분회 간부는 예외로 한다.	중식 보조비, 교통 보조비를 지급한다. <u>제71조</u>[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합의] 농협은 농협노동자에게 제74조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,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. (<u>삭제</u>)	중식 보조비, 교통 보조비를 지급한다. 제74조[연장근로 및 휴일근무의 사전합의] (1차 합의) 농협은 농협노동자에게 제74조 1항 1호 내지 5호에 의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명할 때에는 그 업무의 내용, 소요시간 및 소요인원을 사전에 노동조합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. (삭제)	<u>수용</u>
제76조[연장근로에 대한 상호협조] 농협과 노동조합은 종업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4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	<u>제72조</u>[연장근로에 대한 상호협조] <u>작동</u>	제75조[연장근로에 대한 상호협조] (1차 합의) 농협과 노동조합은 종업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74조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	<u>수용</u>
제83조[정년·퇴직] ① 농협은 종업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농협은 여성노동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	<u>제81조</u>[정년·퇴직] <u>작동</u>	제83조[정년·퇴직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종업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농협은 여성노동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	<u>유지</u>
제84조[해고금지] ① 농협은 여성 직원의 혼인, 임신, 출산,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 ② 농협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, 맞벌이 부부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. ③ 농협은 징계사유, 절차 등에 있어 여성직원을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.	<u>제82조</u>[해고금지] <u>작동</u>	제84조[해고금지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여성 직원의 혼인, 임신, 출산, 유산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. ② 농협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 없이 사내부부, 맞벌이 부부를 해고의 우선순위로 삼을 수 없다. ③ 농협은 징계사유, 절차 등에 있어 여성직원을 남성직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지 않는다.	<u>유지</u>
제85조[육아휴직]	<u>제83조</u> [육아휴직]	제85조 [육아휴직] (1차 합의)	<u>수용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① 농협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.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. ③ 농협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.	<u>① 농협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총 1년 간(산전후 휴가 기간 제외)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</u> <u>②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<u>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임금은 취업규칙에 따른다.</u> <u>④ 농협은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, 승진, 경력,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</u>	① 농협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조합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총 1년 간(산전후 휴가 기간 제외)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②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,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이면 6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임금은 취업규칙에 따른다. ④ 농협은 육아휴직 기간만료 후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조합원에게 직무배치, 승진, 경력, 임금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	
<u>신설</u>	<u>제107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</u> <u>① 협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.</u> <u>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/u> <u>③ 협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은폐나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</u> <u>④ 협동조합은 조사 중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.</u>	<u>제109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</u> (1차 합의) ① 협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.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③ 협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은폐나 2차 가해로 인해 피해자의 고용관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 ④ 협동조합은 조사 중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.	<u>수용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<u>신설</u>	<u>제112조</u>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<u>조합원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농협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u>	<u>제114조</u>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 (1차 합의) 조합원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농협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	<u>수용</u>
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91조[안전 및 보건관리] ① 농협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농협은 사고미연방지 및 직원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.	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<u>제116조</u> [안전 및 보건관리] <u>좌동</u>	제10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<u>제118조</u> 안전 및 보건관리 (1차 합의) ① 농협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② 농협은 사고미연방지 및 직원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.	<u>유지</u>
제92조[안전 및 보건 교육]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.	<u>제117조</u> 안전 및 보건 교육 <u>좌동</u>	<u>제119조</u> 안전 및 보건 교육 (1차 합의)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.	<u>유지</u>
제93조[안전보호장구] ① 농협은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,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	<u>제118조</u> 안전보호장구 <u>좌동</u>	<u>제120조</u> 안전보호장구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작업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,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	<u>유지</u>
제94조[건강진단] ①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초음파검진을 포함한 혈액중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농협은 직원 본인에 대하여 격년마다 종합정밀검진을 실시한다.	<u>제119조</u> 건강진단 <u>좌동</u>	<u>제121조</u> 건강진단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초음파검진을 포함한 혈액중합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농협은 직원 본인에 대하여 격년마다 종합정밀검진을 실시한다.	<u>유지</u>
제98조[직장체육진흥] 농협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체육진흥 및	<u>제124조</u> 직장체육진흥 <u>삭제</u>	<u>제125조</u> 직장체육진흥 (1차 합의) 삭제	<u>수용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체력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 제99조[체육행사 등] ① 농협은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(임차의 경우를 포함) 운영할 수 있다. ② 농협은 조합의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, 문화 또는 교양행사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농협은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,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	제124조[체육행사 등] <u>좌동</u>	제126조[체육행사 등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(임차의 경우를 포함) 운영할 수 있다. ② 농협은 조합의 공식적인 대내외 체육, 문화 또는 교양행사를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③ 농협은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, 시설 및 차량운행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	<u>수용</u>
제103조[직원의 연수기회 확대] 농협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및 국내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한다.	제128조[직원의 연수기회 확대] <u>좌동</u>	제130조[직원의 연수기회 확대] (1차 합의) 농협은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 및 국내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한다.	<u>유지</u>
제104조[주택자금 대출] ① 농협은 직원의 주거안정과 복리후생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대출한다. ②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여 시행한다.	제129조[주택자금 대출] <u>좌동</u>	제131조[주택자금 대출] (1차 합의) ① 농협은 직원의 주거안정과 복리후생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대출한다. ② 주택자금 대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노사합의로 정하여 시행한다.	<u>유지</u>
제105조[생활안정자금 지원] 농협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한다. ① 목적 : 생활안정자금 ② 대출한도 : 1인당 3천만원 이내 ③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130조[생활안정자금 지원] <u>좌동</u>	제132조[생활안정자금 지원] (1차 합의) 농협은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활안정자금대출제도를 시행한다. ① 목적 : 생활안정자금 ② 대출한도 : 1인당 3천만원 이내 ③ 기타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	<u>유지</u>
제106조[피복대여] ① 농협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지급하며, 또한 임신한 직원에게는 임부복을 지급한다. ② 피복사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 다만, 분실	제131조[피복대여] <u>삭제</u>	제131조[피복대여] (1차 합의) 삭제	<u>삭제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훼손, 오염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재 대여한다. ③ 대여피복의 수선 및 세척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비치 사용하는 피복의 경우에는 농협이 부담한다. ④ 농협 피복비를 현 수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성별로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.			
제107조[신원보증보험] 농협은 직원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.	<u>제131조</u>[신원보증보험] <u>좌동</u>	<u>제133조</u>[신원보증보험] (1차 합의) 농협은 직원의 신원보증을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.	<u>수용</u>
제111조[퇴직금 지급사유]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. 1. 의원해직 2. 정년해직 3. 사망으로 인한 퇴직 4. 면직 5. 징계해직 6.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	<u>제135조</u>[퇴직금 지급사유] <u>좌동</u>	<u>제137조</u>[퇴직금 지급사유] (1차 합의)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한다. 1. 의원해직 2. 정년해직 3. 사망으로 인한 퇴직 4. 면직 5. 징계해직 6.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	<u>유지</u>
제115조[사망자의 퇴직금 수령]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.	<u>제139조</u>[사망자의 퇴직금 수령] <u>좌동</u>	<u>제141조</u>[사망자의 퇴직금 수령] (1차 합의)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.	<u>유지</u>
제116조[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] 명예퇴직 실시 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대상자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. 지급금액은 해당농협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	<u>제140조</u>[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] <u>좌동</u>	<u>제142조</u>[명예퇴직자의 특별퇴직금] (1차 합의) 명예퇴직 실시 기간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대상자에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. 지급금액은 해당농협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	<u>유지</u>
제117조[퇴직금 최저지급액]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	<u>제141조</u>[퇴직금 최저지급액] <u>좌동</u>	<u>제143조</u>[퇴직금 최저지급액] (1차 합의) 이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	<u>유지</u>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.		근로기준법상의 최저지급액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한다.	
제14장 단체교섭 제122조[교섭의 원칙] 농협과 조합은 단체교섭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.	제13장 단체교섭 제146조 [교섭의 원칙] 좌동	제13장 단체교섭 제148조 [교섭의 원칙] (1차 합의) 농협과 조합은 단체교섭에 있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한다.	유지
제125조[교섭회의] ① 교섭회의는 노사쌍방 각 대표위원을 포함하여 각각 재적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 ②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기록, 정리를 위하여 교섭위원 외 각각 총무 1인씩을 둔다. ③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녹취를 할 수 있다.	제149조 [교섭회의] ① 삭제 ①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기록, 정리를 위하여 교섭위원 외 각각 총무 1인씩을 두며,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. ②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녹취를 할 수 있다.	제151조 [교섭회의] (1차 합의) ① 삭제 ①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기록, 정리를 위하여 교섭위원 외 각각 총무 1인씩을 두며, 회의 종료 시 노사 교섭대표의 날인으로 회의록을 채택하여 노사가 각 1부씩 보관한다. ② 노사 쌍방은 회의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쌍방이 협의하여 녹취를 할 수 있다.	수용
제15장 노동쟁의 제129조[노동쟁의의 원칙]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쟁의 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농협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4장 노동쟁의 제153조 [노동쟁의의 원칙] 좌동	제14장 노동쟁의 제155조 [노동쟁의의 원칙] (1차 합의) 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, 쟁의 중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농협은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유지
제134조[비상재해 방지 의무] 농협은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상호 협력하여 재해 진압을 위해 노력한다.	제158조 [비상재해 방지 의무] 좌동	제160조 [비상재해 방지 의무] (1차 합의) 농협은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는 상호 협력하여 재해 진압을 위해 노력한다.	수용
제135조[합의중재신청]	제159조 [합의중재신청]	제161조 [합의중재신청] (1차 합의)	수용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노·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한다.	좌동	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된 노동쟁의가 조정에서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때에는 반드시 노·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한다.	
제136회[쟁의 중 교섭] 농협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분쟁 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쟁의중이라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160회 [쟁의 중 교섭] 좌동	제162조 [쟁의 중 교섭] (1차 합의) 농협 또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분쟁 사항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쟁의중이라도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	유지
제4조[보충교섭] 제1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보충교섭을 통해 다시 협의한다.	제4조[보충교섭] 삭제	제4조[보충교섭] (1차 합의) 삭제	삭제
제5조[준용]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판례, 농협의 제 규정,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4조 [준용] 좌동	제4조[준용] (1차 합의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판례, 농협의 제 규정,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유지
제6조[농협(분회)별 협의] 복리후생 등 다음의 조합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농협(분회)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. 제67조, 제101조, 제109조, 별표 1,2,3호	제6조 [농협(분회)별 협의] 삭제	제6조[농협(분회)별 협의] (1차 합의) 삭제	제6조[농협(지회)별 협의] 복리후생 등 다음의 조합원 처우에 관한 사항은 농협(지회)별로 협의하여 시행한다. 제67조, 제101조, 제109조, 별표 1,2,3호
제7조[불이행 책임]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도의적, 민사상,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.	제5조 [불이행 책임] 좌동	제5조[불이행 책임] (1차 합의)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도의적, 민사상, 형사상의 책임은 불이행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.	유지
제8조[협약의 보관]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.	제8조[협약의 보관] 좌동	제8조[협약의 보관] (1차 합의)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4부를 작성하며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행정관청과 상급단체에 1부씩 신고한다.	유지
제9조[시행일] 이 협약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	제9조[시행일] 이 협약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제9조[시행일] 이 협약은 202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	
제10조[본 협약 시행 이전에 체결한 분회별 단체협상의 효력] 본 협약의 시행 이전에 전국농협노동조합	제10조 [본 협약 시행 이전에 체결한 분회별 단체협상의 효력] 삭제	제10조[본 협약 시행 이전에 체결한 분회별 단체협상의 효력] (1차 합의) 삭제	수용

2010년 중울산농협 단체협약	2025년 단체협약 요구안 / 노조안	노동조합 3차 수정안 / 2025.09.16.	회사 제시안 3차 / 2025.09.09.
울경본부 울산지부 산하 각 분회와 농협이 체결한 단체협약(재교섭, 보충협약,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포함)은 본 단체협약과 비교하여 유리할 경우 그 단체협약(재교섭, 보충협약,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포함)에 따르고, 불리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(재교섭, 보충협약,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포함)에 불리한 조항은 자동 폐기되며 본 단체협약이 적용된다.			